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사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공채매입 면제 대상 확대(별표 2)
 -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대상을 『친환경자동차법』 제2조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제2조제3호부터 제6호의 전기, 태양광, 하이브리드,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
-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 적용조항 확대(별표 2)
 - 공채매입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매입금액 감면시한 준용 조항을 『지방세특례제한법』 제66조제3항에서 제6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확대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자동차 등)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, 취득세액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나, 현행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에서는 이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.
 - 이에 전기·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1년 2월 도·시·군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됨.
- 타 시도의 경우, 11개 시·도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고, 서울, 경기, 대구, 경북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확대 면제하고 있음.

※ 타 시·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현황

연료	시·도
하이브리드(11)	충북, 대전, 세종, 충남, 강원, 인천, 울산, 경남, 전남, 전북, 광주
복합(4)	서울(전기, 수소), 경기(전기, 하이브리드), 대구·경북(전기, 하이브리드, 수소)
미적용(2)	부산, 제주

- 본 조례안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대상 자동차의 확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[별표]의 개정 내용은, 공채의 매입면제대상과 관련해,
 - 기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던 것을,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연료전지자동차)로 확대하려는 것임.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<제8조 관련>		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<제8조 관련>	
구분	면제대상 및 내용	구분	면제대상 및 내용
2.사업 · 행위	<p>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,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. 2.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. 3. 채권 매입금액 <u>감면시한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다.</u> 	<p>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,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. 2.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. 3. 채권 매입금액 <u>감면시한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</u> 	

- 이는 정부의 ‘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(’21. 2.)’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,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. 또한 타 시·도에 앞서 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고, 내용상으로도 시의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※ 전기·수소차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시 도민 부담경감 예상액: 연간 6억원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대상에 기존 하이브리드자동차에서 그 밖의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, 태양광, 연료전지)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며,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